

2010 승진형소법기출 경사[윤황채교수]1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형사절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 ②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적극적인 주장·입증이 효과적이므로 실체적 진실주의는 직권주의와 부합되지 않는다.
- ③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발견되어야 하므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④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원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 형기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④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3.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범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지방법원 항소부는 변경된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 ㉡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과 범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사건은 합의부 심판이 원칙이다.
- ㉢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권 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 ②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 역시 무효가 된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5. 다음 중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문맹인 데다가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지만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있는 동거가족인 피고인의 모(母)에게 서류가 교부된 경우

- ②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경우
- ③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母)가 수령한 경우
- ④ 수감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지에다 한 경우

6.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촉빠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촉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 ④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 데도 손님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도우미가 왔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7.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 ②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그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한 아내의 간통죄 고소를 고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8. 친고죄의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나머지 공범자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강간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 ③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간통죄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혼소송을 취한 경우에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변호인에 대해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

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경우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준항고를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0. 현행범인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반드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행위의 기밀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만 있으면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미란다 원칙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행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12.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구속기간의 제한을 넘은 구속이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그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④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3. 체포·구속적부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② 보충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④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4.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보석결정을 위해 구속피고인을 심문할 필요는 없다.
 ②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보석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하여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보석에 관한 결정은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15.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압수·수색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압수물건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③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④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이 지난 뒤 압수물 목록을 작성·교부하였어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16. 압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사법상 피해자가 압수장물의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해품인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도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어 압수했던 것을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 중지하였을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17.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②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이 구속은 위법한 구속이다.
 ③ 구속영장기각 재판에 대해 검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18. 음주운전 수사방법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전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긴 하나 개인적인 차이를 무시한 것이므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써 증명력이 불충분하다.
 ③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시부터 약2시간 후, 집에 있던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 요구당시에도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
 ④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19.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제184조)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②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보전(제184조)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 ③ 증거보전(제184조)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④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위한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만으로도 족하다.

20. 공소제기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甲에게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②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 협박을 분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21.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검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요구는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 ② 검사가 실제적 경합관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 ③ 과실범의 공소사실을 고의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만, 고의범의 공소사실을 과실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장의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2.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이를 채용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23. 특수절도로 기소된 피고인 甲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며 달리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할 수 있다.
- ②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더라도 피고인 甲에 대한 무죄선고가 가능하다.
- ③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더라도 검사는 단순절도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 ④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더라도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24. 다음 중 공판절차의 갱신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파기환송 후 원심법원이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 ②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

④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정지사유 소멸 후 재개된 경우

2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 ②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26.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사고 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
- ② 피고인은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그 법정진술이 직접 자신을 위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적격 인정은 바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 인정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침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선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증인은 선서의무가 있으나 감정인은 선서의무가 없다.
- ㉡ 판결을 선고한 경우, 상소기간은 판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선고해야 한다.
- ㉣ 책임무능력자나 어린이, 피고인의 친인척도 모두 원칙적으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 ㉤ 증인의 출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소송비용의 부담과 벌금, 그리고 감지처분이 가능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물수나 추정의 대상여부 및 추정액
- ㉡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간, 체중 등의 전제사실
- ㉢ 파산법조에 있어서의 파산선고의 확정
-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9. 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경우
- ㉡ 비변호인간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
- ㉢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자백
- ㉣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에 이루어진 자백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제3자가 공갈목적에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당해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에 의하여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지 않는다.

31.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고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그 피의자가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32.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수사기관에서 시중 일관되게 진술한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 ㉡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 ㉢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고 그 곳을 중심으로 소재탐지를 하여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보기1】 밑줄 친 부분의 보강증거 자격과 【보기2】 밑줄 친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해 보면?(판례에 의함)

【보기1】 피고인 甲은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위 조서에 대해서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며, 그것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은 甲이 직접 기재한 수첩의 기재 내용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기재한 바 있다.

【보기2】 乙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수회 강간하면서 약 25시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였다. 법정에 출석한 乙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 바, 이에 검찰 측은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丙을 불러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증언을 듣고자 한다.

① 있음, 있음 ② 있음, 없음 ③ 없음, 있음 ④ 없음, 없음

34.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③ 증거동의를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다.

35. 탄핵증거와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② 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36.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 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고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불과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판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물수와 압수장물의 환부를 신고하면서 적용 법률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하다.

3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 법원은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으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합정 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 ㉡ 제2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기간을 넘는 경우

- 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진 경우
- ㉕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선고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④ 판사의 유치명령이 있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윤 황 채

- 약 력
- 현 서울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JBS 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고려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마산 중앙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울산 남부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인천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경남대학교 형법특강강사
 - 현 전국 경찰형법모의고사 대표출제위원
 - 전 대구 국민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전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형법강의
 - 전 서울 노량진 김재규 경찰학원 강의
 - 전 서울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강의
 - 전 대구 한교고시학원 법원검찰 강의
 - 전 서울 종로 한교고시학원 강의
 - 전 부산 금자탐경찰고시학원 강의
 - 전 영남이공대 경찰경호학과 강의

2010년 경찰관 정기 승진시험 모범답안

계 급		윤! 경사	과 목	윤! 형소법
1	2	3	4	5
②	④	②	③	①
6	7	8	9	10
④	④	③	④	③
11	12	13	14	15
④	③	④	④	①
16	17	18	19	20
②	④	②	③	④
21	22	23	24	25
③	④	④	①	④
26	27	28	29	30
②	①	②	①	④
31	32	33	34	35
④	②	②	③	②
36	37	38	39	40
②	①	④	④	②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웅 2010. 제4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6판]
3. 형법, 형소법용어해설집[도서출판 원라인 2010. 초판]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8. 개정판]
5. 형법조문과 판례[도서출판 예웅 2010.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도서출판 배움 2010. 제2판]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매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10. 개정판]
10. 경찰형법기출문제집[도서출판 원라인 2010. 초판]

☞ 카페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gosicore@naver.com